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람	

제1317호 2017. 11. 27(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27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 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3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소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6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15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건지로 67 외 2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도 열람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11. 2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7-11-2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48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67 (석남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2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45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624-18 (백석동)	20090922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8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26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9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31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108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65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12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72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136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104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259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7-2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26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7-3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6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7-5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78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7-14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248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47-1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219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51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04-1	인천광역시 서구 완창로202번길 6 (마전동)	20081231	완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5, 338-9, 395-9	인천광역시 서구 중흥대로393번길 141 (원창동)	20090706	중흥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9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39-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67번길 22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2-11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98번길 15-1 (가좌동)	20141015	염곡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9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61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14번길 8 (가좌동, 두산연천어빌)	20170703	염곡로 시작지점에서 약140m지점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62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14번길 10 (가좌동)	20170703	염곡로 시작지점에서 약140m지점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67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14번길 28 (가좌동)	20170703	염곡로 시작지점에서 약140m지점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68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14번길 30 (가좌동, 사운드방음)	20170703	염곡로 시작지점에서 약140m지점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61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17번길 7 (가좌동)	20170703	장고개로 시작지점에서 약2,17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2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55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17번길 8 (가좌동)	20170703	장고개로 시작지점에서 약2,17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1627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7. 11.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위 치	면적(m ²)	
C-1	44	4	967.8	공동건축 권장(4,5)	C-1	44	4	831.1	
		5	149.3				5	286.0	
소계			1,117.1		소계			1,117.1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77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163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소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29호(2017.3.1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
시관리계획 【시설: 소공원, 사업명: 신진말소공원 조성사업】 사업을 시행하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 서류를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
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33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소공원)]
 - 명칭: 신진말소공원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A=856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코스모화학(주) 함재경
 -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 5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18. 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가좌동	556-33	공장용지	856.0	856.0	코스모화학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 55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신진말소공원	소공원	가좌동 556-33번지	856	2017.3.13.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16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1.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2018년 아시안게임에 인라인롤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타시도 직장운동경기부(인라인롤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 등록번호를 작성하는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성인지 통계)에 따라 성별을 표시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감독점수산정기준표, 선수점수산정 기준표, 등급별 연봉,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 선전장려금, 입상자보상금 지급기준, 성과금지급점수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

-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성별」 표시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133,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2018년 아시안게임에 인라인롤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타·시도 직장운동경기부(인라인롤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에 따라 성별을 표시하는「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감독점수산정기준표, 선수점수산정기준표, 등급별 연봉,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 선전장려금, 입상자보상금 지급기준, 성과금지급점수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
-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성별」표시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
등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남, 여)
------	--------

[별표 1]

감독 점수 산정 기준표 (제4조제4항 관련)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비고
올림픽대회	특급			36점	33점	30점	개인 및 단체
아시안게임	특급	36점	33점	30점	27점	24점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6점	33점	30점	27점	24점	21점	
전국체육대회 기타국제대회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15점	
전국규모대회	15점	13점	11점	8점	6점	4점	
심의위원회 배점	1점 ~ 40점						

1. 감독 점수는 선수들의(전직이나 현직에서 지도했던 선수) 경기실적을 점수산정 기준표에 의해 배점하여 합산한 점수의 60퍼센트를 적용한 점수와 심의위원이 배정한 평균 점수를 더한다.
2. 감독 점수산정을 위한 선수들의 성적은 연봉을 적용 할 전년도 성적으로 평가한다.

[별표 2]

선수점수산정기준표 (제4조제4항 관련)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비고
올림픽대회	특급			60점	55점	50점	4년
아시안게임	특급	60점	55점	50점	45점	40점	4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60점	55점	50점	45점	40점	35점	2년
전국체육대회 기타국제대회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25점	1년
전국규모대회	40점	35점	30점	20점	15점	10점	1년
감독 배정(근무태도 등)	1점 ~ 10점						
심의위원회 배정	1점 ~ 20점						

비고. 선수들의 경기 성적은 연봉을 적용 할 전년도 성적으로 평가한다.

[별표 4]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등급별 연봉(제9조제3항 관련)

(단위 : 천원)

직책	등급	연봉액		비고
		점수	보수액	
감독	1	500점 이상	60,000	
	2	400점 이상 ~ 500점 미만	58,000	
	3	300점 이상 ~ 400점 미만	56,000	
	4	200점 이상 ~ 300점 미만	53,000	
	5	100점 이상 ~ 200점 미만	50,000	
	6	90점 이상 ~ 100점 미만	47,000	
	7	80점 이상 ~ 90점 미만	44,000	
	8	70점 이상 ~ 80점 미만	39,000	
	9	60점 이상 ~ 70점 미만	34,000	
선수	1	○ 올림픽대회(4년) 3위 이내, 아시안게임(4년) 1위 입상 ○ 배점 합계 700점 이상	60,000	
	2	○ 세계선수권대회 1위, 아시안게임 2, 3위 입상 ○ 배점 합계 600점 이상	58,000~ 56,000	
	3	○ 세계선수권대회 2, 3위,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입상 ○ 전국체육대회 개인 1위 입상 ○ 배점 합계 500점 이상	56,000~ 54,000	
	4	○ 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 3위 이내 입상 ○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 배점 합계 400점 이상	54,000~ 48,000	
	5	○ 전국규모대회 1위 입상 ○ 국가대표 선발 ○ 배점 합계 300점 이상	48,000~ 44,000	
	6	○ 배점 합계 200점 이상	4,400~ 4,000	
	7	○ 배점 합계 100점 이상 ~ 200점 미만	40,000~ 30,000	
	8	○ 배점 합계 40점 이상 ~ 100점 미만	30,000~ 26,000	
	9	○ 배점 합계 40점 이하	24,000	

1. 별표 1과 2에 의한 점수 적용
2. 감독 9등급 미만, 선수 9등급 미만인 경우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

[별표 5]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제11조 관련)

(단위 : 천원)

급수	유 치 비 기 준	최소계약 유지기간	지급액
1급	○ 올림픽(4년 이내), 아시안게임(4년 이내)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5년	50,000
2급	○ 2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개인부문 3위 이내의 입상 경력자	4년	40,000
3급	○ 현재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활약하고 있는 사람 ○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 입상 경력자	3년	30,000
4급	○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2위 입상 경력자	2년	20,000
5급	○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3위 입상 경력자	2년	10,000

1.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 기준은 해당선수의 신규 입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국가대표선수의 자격 기간은 대한인라인롤러연맹의 국가대표선수 선발지침을 준용한다.

[별표 6]

대회출전 선전 장려금 지급액(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 기타국제대회	전국규모대회	비 고
금 액	선수 및 지도자당 500,000원	팀당 500,000원	팀당 300,000원	

[별표 7]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제12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지급기준				
	종목별	지급액 (단위 : 원)			
		1 위	2 위	3 위	
입상	선수	올림픽대회	10,000	7,000	5,000
		아시안게임	7,000	5,000	3,000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000	2,000	1,000
		전국체육대회 기타국제대회	1,000	700	500
		전국규모대회	500	300	200

비고. 입상보상금 지급은 동일인이 단체분야와 개인분야로 지급하며, 각 분야에서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분야별 최고 입상성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별표 8]

성과금지급점수 산정기준(제12조제3항 관련)

(단위 : 점)

구 분	1위	2위	3위	비고
올림픽대회	300	250	200	※ 동일인이 같은 대회의 단체 분야와 개인분야에서 각각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각 분야별 최고 입상성적에 대하여 점수 산정한다.
아시안게임	200	150	100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100	90	80	
전국체육대회 기타국제대회	80	70	60	
전국규모대회	30	20	10	

비고 각종 입상자의 신기록 수립 시 추가로 가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올림픽신기록 50점, 아시안게임신기록 40점, 세계신기록 30점, 아시아신기록 20점
한국신기록 10점, 대회신기록 5점)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

○ 주 소 :

○ 종 목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인라인롤러 선수로서 우수한 자질과 경기력을 보유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 경기단체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 이라 한다)는 (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선수)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의 증명을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상호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및 의무)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 라 한다) 발전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합의된 연봉을 지급할 의무를 갖고, 을은 갑의 규정을 준수하며 그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_____년 1월 1일부터 _____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기준연봉) 갑은 제2조의 계약기간에 을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일금 _____원(세금포함)을 기준연봉으로 하여 이 계약서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연봉의 조정) 갑은 이 계약에 의한 을의 이행 정도와 경기실적 결과에 따라 연봉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갑과 을은 연봉지급방법에 대하여 양자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방법 : 연봉액을 12회로 분할 지급한다.
2. 지급시기 :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근무일에 지급한다.

제6조(입상보상금) 갑이 을에게 출전을 요구한 대회의 경기종료 후 그 성적에 따라 갑은 을에게 입상자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갑은 규정과 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을로 하여금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갑에게 명예훼손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오지 않도록 독려할 권리가 있는 반면, 모든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 을의 이익보호와 을의 권리행사에 적극 협조한다.

② 을은 규정과 계약서상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이 요구하는 경기 및 갑의 훈련을 포함한 모든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을은 갑의 의무이행 도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갑이 협약한 지정병원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을에게 수혜자격이 있다. 다만, 을과 갑의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건강을 해치는 어떠한 활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5. 을은 갑의 규정 및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훈련과 관련된 비밀이나 내부적 사항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지불의 한계) 을은 제3조 및 제6조에 명시된 것 이외의 보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사고 시 보수지급)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운동경기부활동이 불가능하였을 때 31일째 되는 날부터 훈련 및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1년을 기준으로 연봉의 330분의 1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상 등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활동경비의 부담) 갑은 계약에 명시된 연봉 외에 계약기간 동안 을이 갑을 위하여 전지훈련, 대회참가로 출장하는 경우의 활동경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를 부담한다.

제11조(용기구) 갑은 훈련 또는 경기에 필요한 용기구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상해보험)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실시한 훈련 및 경기로 인한 상해(사망 포함)를 대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상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3조(건강진단) 을은 계약 체결 전 육체 및 정신적인 면에 대한 결함 유무를 증명하기 위해 종합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 그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을의 계약위반)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계약 파기
2. 갑이 입은 피해액의 보상에 필요한 금액을 을에게 배상 요구

제15조(계약갱신) 선수계약 갱신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계약해지) 조례 제6조의 의무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르며, 분쟁 발생 시에는 인천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른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할 경우 또는 감독, 소속선수 간 불화 등으로 인한 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더 이상 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팀 해체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년 월 일

“갑” 인천광역시 서구 청 장 (인)

“을”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별지 제6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부 명	성명(한자)				생년월일	(남, 여)							
성 명 (한 글)	본관		성별	주소						생활근거지	등록기준지		
				주소2									
	병 력 관 계	해 당 없 음	미 필				복 무						
			역종	체격등위	미필사유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영년월일	전역년월일	MOS
	개 인 신 상 관 계	신체 사항	신 장	체 중	시 력		색 멍		혈액형	간강태	종 교	취 미	특기
		재산 사항	동 산		부 동 산		가 옥		부 업 명	부업일수	재 산 총 액		
		정당 사회 단체	단 체 명		직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단 체 명		직 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가 족 사 향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직장·직위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직장·직위		
학 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과목		학위	기 간		학교명 및 전공과목		학위			
전 력	기 간		근무처		직위	기 간		근무처		직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이 면 사 항	임용년월일	직 위		확 인	퇴직년월일	직위		확 인		
여 봉	년월일	연봉	근무일수	확인	년월일	연봉	근무일수	확인		
이 면 후 경 기 실 적	기간	대회명		장소	전적	기간	대회명		장소	전적
이 면 후 경 기 실 적	기간	대회명		장소	전적	기간	대회명		장소	전적

[별지 제12호서식]

퇴 직 급 여 청 구 서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퇴 직 년 월 일	
퇴직당시 소속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인라인롤러부)	퇴직당시직명	

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

소 속	직 명	근 무 기 간	발 령 청	확인(업무담당)
		. . . ~ . . . (총근무일수 :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 퇴직전 : 원 월평균 보수	○ 퇴직금 : 원 산출액	○ 퇴직금 전환금 : 원 납부액
---------------------	------------------	-------------------------

[참고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 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